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4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 ④ (생략)</p> <p>1. ~ 7. (생략)</p> <p>8. <u>규칙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u> <u>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은</u> <u>별표 제1호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u> <u>임표에 따른다. < 후단 신설 ></u></p> <p>⑤ (생략)</p> <p><u><신설></u></p>	<p>제24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 ④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규칙 제4조의3제1항제4호의 -----</u> <u>-----</u> <u>별표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규칙 제</u> <u>4조의3제1항제4호에서 “운임을 알</u> <u>수 없는 경우”란 수입신고를 할 때</u> <u>운임명세서 또는 이에 같음할 수 있</u> <u>는 서류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을</u> <u>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u>제31조(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u> <u>물품)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u> <u>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수정, 별표 제목을 규칙과 동일하게 “탁송 품”으로 통일 • 규칙의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의미 명확화 •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예시로 규 정

제33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③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방법으로 비교대상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다.

제31조(제4방법 적용요건) ① (생략)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의 "조세와 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법 제33조제2항의 경우

2. 영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입 신고일부터 90일 이내 판매되는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34조에 따른 방법으로 비교대상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지 않는 경우

4. 제36조에 따라 영 제27조제5항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납세의무자 비율"이라 한다)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제32조(법 제33조에 따른 금액 산정 시 고려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세

• (조·항 이동) 제33조 제3항에서 이동

•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

• (조 이동) 제31조에서 이동, 조 제목 변경

• 문구 수정

밖의 공과금”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조세등을 적용한다.

③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 수입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매 신고건수별로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공제요소비용을 계산하는 대신에 일정기간 동안의 국내판매가격에 대한 공제요소비용의 비율을 산출하여 적용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영 제30조에 따라 공제율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3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⑤ 세관장은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및 납세의무

와 그 밖의 공과금”은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가격을 기초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③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고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장은 매 신고건별로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33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이하 “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계산하는 대신에 영 제3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국내판매가격에 대한 공제금액의 비율(이하 “공제율”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산출대상 품목군 등의 결정) ① 세관장이 영 제27조제6항에 따라 제4

• 문구 수정

• 산출대상 품목군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자의 수입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결정한다.

1.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수입물품(이하 이 조에서 "산출대상 품목군"이라 한다)

2. 제1호의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물품의 품목번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제4방법 적용대상 수입물품(이하 "산출대상 품목군"이라 한다)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대상 품목군을 연도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

2. 해당 수입물품 및 관련 산업의 특성

3. 납세의무자의 취급품목, 국내판매형태, 사업부문 및 회계자료의 구분 여부 등 사업의 내용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물품의 품목번호의 범위(이하 "동종·동류 품목번호"라 한다)를 연도별로

규정

- 동종·동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절차 규정

제33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결정된 품목번호의 범위에 대한 연도별 수입실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상위 100개 업체를 선정한다.

결정하여야 한다.

1. 산출대상 품목군의 10단위부터 2단위까지의 품목번호 중 대표성이 있는 품목번호. 다만, 품목이 다양한 경우 여러 품목번호 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

2. 산출대상 품목군의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이 80% 이상인 품목번호. 다만, 다른 산업부문의 업체가 선정될 우려가 있는 품목번호 등은 제외할 수 있다.

제34조(비교대상업체의 선정) ① 세관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들을 비교대상업체 후보군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산업의 특성과 연도별 수입실적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업체 후보군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 (조·항 이동) 제33조제6항에서 이동, 최초 단계에서 동종·동류 품목번호와 업종 부호를 동시 적용, 선정단계별 업체수 제한(100개, 30개) 삭제
- 비교대상업체 후보군의 규모 조정 근거 마련

⑦ 제6항에 따라 선정된 100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도별 수입실적 기준 30개 업체를 비교대상 후보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업체만을 비교대상 후보업체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

가. 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납세의무자의 업종. 다만, 납세의무자가 여러 품목군을 취급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업종과 산출대상 품목군이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산출대상 품목군을 주로 취급하는 업종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의 업종,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주요 경쟁업체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통계청에서 정한 「한국표

1.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연도에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업체

2. 수입시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로서 납세의무자의 업종

나. 가목의 업종, 주요 경쟁업체의 업종,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

• (조·항 이동) 제33조제 6항 및 제7항에서 이동, 업체수 제한 삭제

• 업종 부호의 출처 변경 및 업종 부호의 기준 시점 규정

준산업분류표」의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선정한 연계 업종

<신 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산출대상 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그 밖

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의 업종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업체 후보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다.

1.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금액이 납세의무자의 해당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100분의 150 이하인 업체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 × 50%	≤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금액	≤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 × 150%
--	---	------------------------------------	---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해당 회계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그 밖

• 비교대상업체 선정 시 충족조건

- 납세의무자의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수입금액이 유사한 업체 선정 기준 신설

에 외부감사 결과가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업체는 비교대상 후보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3.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물품의 국내판매형태(상품 판매, 제조 가공 후 판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 후보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4. 제3호의 국내판매형태에 대한 매출액이 매출원가 보다 많은 업체

⑧ 제7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 후보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비교대상업

에 외부감사 결과가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3.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물품의 국내판매형태(상품 판매, 제조 가공 후 판매)가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국내판매형태에 대한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많은 업체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제외한다.

- (조·항 이동) 제33조제 8항에서 이동, 비교대상 업체 선정 시 제외조건

체를 선정한다.

1. 동종·동류 물품의 수입액 비중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출대상 품목군의 국내판매형
태가 상품 판매인 경우: 상품매출
원가의 30퍼센트 미만

나. 산출대상 품목군의 국내판매형
태가 제조가공 후 판매인 경우:
제품매출원가의 10퍼센트 미만

2.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이 현저
한 차이가 나는 경우

가. 비교대상 후보업체의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나. 제7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

1. 매출원가 대비 동종·동류 품목번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
의 비율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
당하는 업체

가. 산출대상 품목군의 국내판매형
태가 상품 판매인 경우: 상품 매
출원가 대비 동종·동류 품목번호
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
의 비율이 100의 30 미만

나. 산출대상 품목군의 국내판매형
태가 제조가공 후 판매인 경우:
제품 매출원가 대비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
한 금액의 비율이 100의 10 미만

2.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각 비교대상
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이 비교대상업
체 전체의 매출액 합계액에서 매출
총이익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100분의 150

- 매출총이익률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명확한 수
치 제시

후보업체 전체의 매출액 총 합계액
에서 매출총이익 총 합계액이 차지
하는 비율

3. 영 제23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
당하는 판매자로부터 산출대상 품목
군과 동종·동류 물품을 구매(수입)
하고, 동 수입물품의 가격이 특수관
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세관장이 인
정한 경우

⑨ 제8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업체
의 수가 2개 이하이거나 그 밖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교대상업
체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1. 제8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제외 조건을 합리적인 기
준에 따라 완화하는 방법
2. 산출대상 품목군과 해당 산업부문

초과인 업체

3.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제
1항의 특수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았
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업체

<삭 제>

- 제33조, 제34조 및 제36
조의 선정조건을 완화하
는 것은 제4방법이 아니
고 제6방법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
39조제3항을 신설하고
동 조항을 삭제

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후보)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제33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① 세관장은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그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같은 연도에 같은 품목군에 대하여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 관련 업계 또는 단체 등에게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동종·동류비율

제35조(동종·동류비율의 산출 및 통보 등) ①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은 세관장이 제34조에 따라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산출한다.

② ----- 경우에는 ----- 제34조에 따른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이 조에 따른 동종·동류비율

- (조·항 이동) 제33조제1항에서 이동, 동종·동류비율 산출 및 통보 방법을 산출대상 품목군 등의 결정,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별도 조항으로 분리
- 제34조제2항제1호 신설에 따라 다른 납세의무자의 비율을 준용하기 어려움
- (조·항 이동) 제33조제2항에서 이동, 문구 수정

산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⑩ 세관장은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5항제1호의 산출대상 품목군의 범위
2. 제5항제2호의 동종·동류 물품의 품목번호의 범위
3. 제7항제2호 각 목의 업종
4. 제7항제3호의 국내판매형태

제33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④ 세관장은 제32조에 따라 계산한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및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동종·동류 비율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

--.

③ 세관장은 제33조,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및 동종·동류 품목번호
2.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종
3.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판매형태
4. 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동종·동류 비율을 산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 산출내역서에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

• (조·항 이동) 제33조 제10항에서 이동, 납세의무자의 비율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회 부여 추가

• (조·항 이동) 제33조제4항에서 이동, 동종·동류비율과 함께 납세의무자 비율 통보

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한다.

제32조(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 ① 영 제27조제5항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란 제4방법이 적용되는 해당 수입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에 대해 구분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동종·동류의 물품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기초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를 구분 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 속하는 물품으로 한다.

③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가 작성되

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동종·동류비율
2. 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

제36조(납세의무자 비율 산출) ① 납세의무자 비율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의 물품에 대해 구분 계산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매출원가를 기초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text{납세의무자 비율} = \frac{\text{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의 물품 매출액의 합} - \text{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의 물품 매출원가의 합}}{\text{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의 물품 매출액의 합}}$$

<삭 제>

② 세관장은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일이

• (조 이동) 제32조에서 이동, 조 제목 변경, 납세의무자의 산출대상 품목군별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 방법 규정

• 제1항에 따라 중복되어 삭제

• 직전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를 적용하는 경우

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를 기초로 계산할 수 있다.

속하는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에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직전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를 기초로 납세의무자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를 구체적으로 규정

제34조(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① (생략)

② 영 제27조제8항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서(이하 “이의제기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33조제4항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을 통보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및

제37조(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를 제35조제4항 -----

-----.

1.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동종·동류 품목번호 또는 제34조제

- (조 이동) 제34조에서 이동
- 이의제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그 근거자료

2. 해당 수입물품(품목군)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3. 제2호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자료

③ 납세의무자는 제3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비교대상(후보)업체 선정 기준을 대상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동종·동류비율의 재검토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항제2호에 따른 업종 등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와 그 근거자료

2. 납세의무자가 재산출한 납세의무자 비율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자료(제36조에 따라 세관장이 산출한 납세의무자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삭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2호에 포함하고 동 조항은 삭제
- 제2항에 이의제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동 조항은 삭제

- (조·항 이동) 제34조제4항에서 이동
- (조·항 이동) 제34조제5항에서 이동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반려할 수 있다.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 물품의 범위 및 적정한 비교대상업체 선정 등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자료 보완기간 제외) 이내에 이의제기의 재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이 조의 이의제기에 따라 산출된 동종·동류비율이 제33조에 따라 산출

----- 이의제
----- 기한 납세의무자가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의제기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세관장 의견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세관장 및 이의제기한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품목번호의 범위 및 제34조에 따른 비교대상업체의 선정 등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자료 보완기간 제외)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반영하여 산출된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한 과세가

- 문구 수정

- (조·항 이동) 제34조제 6항에서 이동
- 문구 수정

- (조·항 이동) 제34조제 7항에서 이동

된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적용한다.

제35조(제5방법 적용요건) 수입자가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다.

제36조(제6방법 적용요건) ①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격이 제35조에 따라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한 과세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한다.

제38조(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 물품) 납세의무자가 ----- 제5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제39조(제6방법의 적용) ①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 범위 내에서 -----

- 문구 수정

- (조 이동) 제35조에서 이동
- 조 제목 변경, 문구 수정

- (조 이동) 제36조에서 이동
- 문구 수정
- 띄어쓰기 수정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신축 적용하여야 하며,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신 설>

--.

② -----
-----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를 적용순서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전에 -----.

③ 제2항에 따라 제4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규칙 제7조제2항의 경우
2. 규칙 제7조제3항의 경우
3.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및 동종·동류 품목번호
4.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종
5.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액

• 문구 수정

• 제6방법에서 제4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요건 완화 대상을 구체적인 예시로 규정

제37조 · 제38조 (생략)

제39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①
규칙 제7조의9제1항에 따라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규칙 제7조9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산율(공제율) 결정서를 발급한다.

② ~ ③ (생략)

6.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매출원가 대비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의 비율

7.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출총이익률

8. 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

제40조 · 제41조 (현행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음)

제42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①

----- 제7조의9
제3항에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조 이동) 제37조·제38조에서 이동

• (조 이동) 제39조에서 이동

• 문구 오류 수정

제40조 (생략)

제41조(사전상담)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상담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상담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전문가 등의 자문)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신청인의 관할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 국세청장 등 유관정부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43조(심사결과 통보) ①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영 제31조제3항제

제43조 (현행 제40조와 같음)

제44조(사전상담) 제43조제1항에 -----

-----.

제45조(전문가 등의 자문) ① -----
----- 제43조제1항에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심사결과 통보) ① 제43조제1항에 -----

• (조 이동) 제40조에서 이동

• (조 이동) 제41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 (조 이동) 제42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 (조 이동) 제43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 관예정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사와 관련한 자료 보완, 신청내용 변경 및 업무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은 영 제 31조제2항·제9항 및 제1항을 준용하며, 제1항의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 심사 재심사 결과 통보서”로 대체한

② -----

영 제 31조제2항 및 제9항과 이 고시 같은조 제1항을 준용하며, -----

• 문구 수정

다.

제44조 (생략)

제45조(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① ~ ② (생략)

③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및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 또는 각각 해당 사전심사의 재심사 신청의 반력에 관한 사항은 제40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에서 “재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란 제4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를 통보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 ~ ⑤ (생략)

제46조(사전상담) ① 제45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평가분

ㄱ.

제47조 (현행 제44조와 같음)

제48조(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43조제3항
을 ----- 제43조제3항에서

----- 제51조제3항에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사전상담) ① 제48조에 -----

• (조 이동) 제44조에서 이동

• (조 이동) 제45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 (조 이동) 제46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류원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상담을 수행할 본부세관장을 지정해야 하며, 해당 본부세관장은 상담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 기회를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제45조제4항의 사전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상담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기회를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7조(사전심사) ① 제45조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에게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생략)

③ 본부세관장은 제45조에 따른 사전

-----.

② 제48조제4항의 -----

-----.

제50조(사전심사) ① 제48조에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48조에 -----

- (조 이동) 제47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심사의 신청이 영 제31조제6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반려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이 통보한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반려 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전심사를 반려할 수 있다.

④ ~ ⑨ (생략)

⑩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48조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은 신청물품의 수입신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계산식을 포함한다)으로 결정해야 한다.

⑪ (생략)

⑫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가 영 제31조제6항, 제40조제3항,

----- 제43조제3항에 -----

-----.

④ ~ ⑨ (현행과 같음)

⑩ ----- 제51조제1항에 -----

-----.

⑪ (현행과 같음)

⑫ ----- 제43조제3항,

제8항에 따라 반려되거나 영 제31조제9항,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에는 반려 또는 철회 사실을 신청인, 해당 사전심사 견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사전심사 결과통보) ① 관세평가 분류원장은 제45조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영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법 제3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여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 제51조제3항 -----

제51조(사전심사 결과통보) ① -----
----- 제48조에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조 이동) 제48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를 신청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과 거래내용의 특성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영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사전심사 결과 변경 등)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⑦ ----- 제48조제2항에 -----

 -----.

제52조(사전심사 결과 변경 등) ① ---

 -----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에 -----
 -----.

② (현행과 같음)

- (조 이동) 제49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제50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 37조제5항 및 영 제31조제8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7호서식의 연례보고서를 제47조제11항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한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일 경우 당해 연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연례보고서를 제출받은 본부세관장은 그 연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제48조제5

제53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 -----

----- 제50조제11항에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51조제5

• (조 이동) 제50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항에 따라 교부받은 사전심사 결정서의 내용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 신고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본부세관장은 연례보고서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7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이 통보한 사실을 검토한 결과 법 제37조 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제49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1조·제52조 (생략)

제53조(준용규정) 제40조제2항 및 제42조

항에 -----

----- 제50조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52조 -----
-----.

제54조·제55조 (현행 제51조 및 제52조와 같음)

제56조(준용규정) 제43조제2항 및 제45조

• (조 이동) 제51조 및 제52조에서 이동

• (조 이동) 제53조에서

의 규정은 특수관계 사전심사에 준용한다.

제54조·제55조 (생략)

제56조(협회의 운영) ① 협회는 제55조제2항의 심의 안건에 대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54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생략)

1. ~ 2. (생략)

3. 제5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소속 기관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4. (생략)

③ ~ ⑧ (생략)

제57조 (생략)

의 -----
--.

제57조·제58조 (현행 제54조 및 제55조와 같음)

제59조(협회의 운영) ① ----- 제58조제2항의 -----
----- 제57조제3항에 -----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57조제2항제1호에 -----

4.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60조 (현행 제57조와 같음)

이동, 근거 조항 변경

• (조 이동) 제54조 및 제55조에서 이동

• (조 이동) 제56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 (조 이동) 제57조에서

제58조(관세평가자문단) ① (생략)

② 제1항의 전문가는 자문단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자문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제59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제61조(관세평가자문단)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60조를
-----.

제62조(재검토 기한) -----

----- 2024년 1월 1일 -----

-----.

부칙 <제2023-00호, 2023.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

이동

- (조 이동) 제58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 (조 이동) 제59조에서 이동

- 탁송품 운임, 제4방법부

	<p><u>8호 및 별표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u></p> <p><u>제3조(폐지 규정)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에 관한 지침”(법인심사과-321, 2021.2.22.)은 2024년 1월 1일에 폐지한다.</u></p>	<p>터 제6방법까지 개정 규정의 시행일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제1호,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 개정 규정의 적용례 규정 • 제4방법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과 관련한 규정 개정에 따른 기존 지침 폐지
--	--	--

현행

[별표 제1호]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중량 (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중량 (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0 까지	10,500	12,950	18,900	19,600	16.0 까지	59,700	105,000	129,000	217,000
2.0 "	14,140	19,600	29,050	30,100	17.0 "	63,100	111,000	135,000	230,000
3.0 "	17,150	22,400	35,700	38,500	18.0 "	66,500	117,000	141,000	243,000
4.0 "	26,500	38,000	57,000	67,000	19.0 "	69,900	123,000	147,000	256,000
5.0 "	28,500	43,400	63,000	79,000	20.0 "	73,300	129,000	153,000	269,000
6.0 "	30,500	48,800	69,000	91,000	21.0 "	76,700	135,000	159,000	281,600
7.0 "	32,500	54,200	75,000	103,000	22.0 "	79,900	140,500	165,000	294,200
8.0 "	35,500	59,600	81,000	115,000	23.0 "	82,900	144,100	171,000	306,800
9.0 "	38,500	65,000	87,000	127,000	24.0 "	85,700	146,700	177,000	319,400
10.0 "	41,500	70,400	93,000	139,000	25.0 "	88,300	149,300	183,000	332,000
11.0 "	44,500	75,800	99,000	152,000	26.0 "	90,900	151,900	189,000	344,600
12.0 "	47,500	81,000	105,000	165,000	27.0 "	93,500	154,500	195,000	357,200
13.0 "	50,500	87,000	111,000	178,000	28.0 "	96,100	157,100	201,000	369,800
14.0 "	53,500	93,000	117,000	191,000	29.0 "	98,700	159,700	207,000	382,400
15.0 "	56,500	99,000	123,000	204,000	30.0 "	101,300	162,300	213,000	395,000

※ 물품의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30KG 해당 운임에 30KG과 29KG간의 지역별 운임차액을 30KG 초과중량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

제1지역	중국, 홍콩, 일본, 마카오, 대만	
제2지역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고,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라오스, 동티모르, 기타 동남아시아국가	
제3지역	북미	미국(하와이, 알래스카 포함), 캐나다
	서유럽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러시아,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구소련연방 등
	중동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괌, 사이판 등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제4지역	아프리카	이집트, 케냐, 리비아 등
	중남미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 등
	서인도제도	쿠바, 타이티, 도미니카 등
	남태평양	피지, 키리바티, 솔로몬제도, 사모아 등

개정

[별표 제1호]

탁송품 과세운임표

1. 적용지역별 국가명

국가별 (20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제1지역	마카오,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제2지역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네팔, 스리랑카, 몰디브, 부탄	
제3지역	서유럽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구소련연방 등
	중동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시리아 등
	대양주	파푸아뉴기니, 괌, 사이판 등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등
제4지역	아프리카	이집트, 케냐, 리비아 등
	중남미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페루 등
	서인도제도	쿠바,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등
	남태평양	피지, 키리바티, 솔로몬제도, 사모아 등

현행

개정

2. 국가별 적용운임

중량 (KG)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1.0 까지	34,800	39,200	37,800	21,000	35,400	37,800	21,000	25,200	21,000	21,000
2.0 "	49,800	55,700	48,000	29,600	43,800	48,400	27,800	30,600	30,000	28,600
3.0 "	61,200	72,200	58,200	38,200	51,600	59,000	34,600	36,000	39,000	36,200
4.0 "	72,600	88,800	68,400	46,800	60,000	69,600	41,400	40,800	48,000	43,800
5.0 "	84,000	105,000	77,400	50,400	67,800	78,000	44,400	45,600	51,600	49,800
6.0 "	96,000	124,200	86,400	54,600	75,600	87,000	48,000	50,400	55,800	55,800
7.0 "	107,400	143,400	96,600	58,200	84,600	96,000	51,600	55,200	60,000	61,800
8.0 "	118,800	163,200	106,800	62,400	95,400	106,200	55,200	60,000	64,200	68,400
9.0 "	130,200	182,400	117,000	66,600	106,200	116,400	60,000	64,800	68,400	75,600
10.0 "	141,600	201,600	126,600	70,200	117,000	126,600	64,800	70,200	72,000	82,200
11.0 "	153,000	220,800	136,800	74,400	127,200	136,800	69,600	76,800	76,200	89,400
12.0 "	165,000	240,000	147,000	78,000	138,000	147,000	74,400	83,400	80,400	96,000
13.0 "	176,400	259,200	157,200	82,200	148,800	156,600	79,200	90,000	84,600	103,200
14.0 "	187,800	278,400	167,400	86,400	159,600	166,800	84,000	96,600	88,200	110,400
15.0 "	199,200	297,600	177,600	90,000	169,800	177,000	88,800	103,200	91,800	117,000
16.0 "	210,600	316,800	187,200	94,200	180,600	187,200	93,000	109,800	95,400	124,200
17.0 "	222,000	336,000	197,400	99,000	191,400	197,400	97,800	116,400	99,000	130,800
18.0 "	234,000	355,200	207,600	103,800	202,200	207,600	102,600	122,400	102,600	138,000
19.0 "	245,400	375,000	217,800	108,000	213,000	217,800	107,400	129,000	106,200	144,600
20.0 "	256,800	394,200	228,000	112,800	223,200	228,000	112,200	135,600	109,800	151,800
21.0 "	268,200	413,400	237,600	117,600	234,000	237,600	117,000	142,200	113,400	158,400
22.0 "	279,600	432,600	247,800	122,400	244,800	247,800	121,800	148,800	117,000	165,600
23.0 "	291,600	451,800	258,000	126,600	255,600	258,000	126,600	155,400	120,600	172,200
24.0 "	303,000	471,000	268,200	131,400	265,800	268,200	131,400	162,000	124,200	179,400
25.0 "	314,400	490,200	278,400	136,200	276,600	278,400	136,200	168,600	127,800	186,000
26.0 "	325,800	509,400	288,000	140,400	287,400	288,600	140,400	175,200	131,400	193,200
27.0 "	337,200	528,600	298,200	145,200	298,200	298,800	145,200	181,800	135,000	200,400
28.0 "	348,600	547,800	308,400	150,000	309,000	309,000	150,000	187,800	138,600	207,000
29.0 "	360,600	567,000	318,600	154,800	319,200	318,600	154,800	194,400	142,200	214,200
30.0 "	372,000	586,800	328,800	159,000	330,000	328,800	159,600	201,000	145,800	220,800

※ 물품의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30KG 해당 운임에 30KG과 29KG간의 국가별 운임차액을 30KG 초과중량(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계산)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

현행

개정

중량 (KG)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1.0 까지	33,600	24,600	37,800	21,600	37,800	21,000	25,200	37,800	33,500	22,800
2.0 "	45,000	30,000	53,400	28,800	48,200	25,400	30,000	48,600	47,500	27,000
3.0 "	54,600	34,200	69,000	34,200	58,600	29,800	34,800	59,400	61,000	30,600
4.0 "	64,800	38,400	84,600	39,600	69,000	34,200	39,600	70,200	74,500	34,200
5.0 "	75,000	42,600	96,600	45,000	79,800	37,200	43,800	78,600	88,000	37,200
6.0 "	85,200	46,800	108,000	51,000	90,600	40,800	48,600	86,400	102,000	40,800
7.0 "	96,000	51,000	120,000	56,400	101,400	45,000	52,800	96,600	115,500	45,000
8.0 "	106,200	55,800	131,400	61,800	111,600	49,800	58,200	106,800	129,000	49,800
9.0 "	117,000	60,600	143,400	67,800	122,400	54,600	63,600	117,000	142,500	54,600
10.0 "	127,200	66,000	154,200	73,200	133,200	58,800	69,600	126,600	156,000	58,800
11.0 "	138,000	70,800	164,400	78,600	143,400	63,600	75,600	136,800	169,500	63,600
12.0 "	148,200	76,200	174,000	84,600	154,200	67,800	81,000	147,000	183,500	67,800
13.0 "	158,400	81,000	184,200	90,000	165,000	72,600	87,000	157,200	197,000	72,600
14.0 "	169,200	86,400	193,800	95,400	175,200	76,800	92,400	166,800	210,500	76,800
15.0 "	179,400	91,200	204,000	101,400	186,000	81,600	98,400	177,000	224,000	81,600
16.0 "	190,200	96,600	214,200	106,800	196,800	86,400	103,800	187,200	237,500	86,400
17.0 "	200,400	101,400	223,800	112,200	207,000	90,600	109,800	197,400	251,000	90,600
18.0 "	211,200	106,200	234,000	117,600	217,800	95,400	115,200	207,000	264,500	95,400
19.0 "	221,400	111,600	244,200	123,600	228,600	99,600	121,200	217,200	278,500	99,600
20.0 "	232,200	116,400	253,800	129,000	239,400	104,400	126,600	227,400	292,000	104,400
21.0 "	242,400	121,800	264,000	134,400	249,600	109,200	132,600	237,600	305,500	109,200
22.0 "	253,200	126,600	273,600	140,400	260,400	113,400	138,600	247,200	319,000	113,400
23.0 "	263,400	132,000	283,800	145,800	271,200	118,200	144,000	257,400	332,500	118,200
24.0 "	274,200	136,800	294,000	151,200	281,400	122,400	150,000	267,600	346,000	122,400
25.0 "	284,400	141,600	303,600	157,200	292,200	127,200	155,400	277,800	360,000	127,200
26.0 "	295,200	147,000	313,800	162,600	303,000	131,400	161,400	287,400	373,500	131,400
27.0 "	305,400	151,800	323,400	168,000	313,200	136,200	166,800	297,600	387,000	136,200
28.0 "	315,600	157,200	333,600	174,000	324,000	141,000	172,800	307,800	400,500	141,000
29.0 "	326,400	162,000	343,800	179,400	334,800	145,200	178,200	318,000	414,000	145,200
30.0 "	336,600	167,400	353,400	184,800	345,000	150,000	184,200	327,600	427,500	150,000

※ 물품의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30KG 해당 운임에 30KG과 29KG간의 국가별 운임차액을 30KG 초과중량(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계산)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

현행

개정

3. 지역별 적용 운임

중량 (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중량 (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0 까지	21,000	25,900	37,800	39,200	16.0 까지	105,600	165,600	206,400	311,400
2.0 "	27,600	33,400	48,400	56,900	17.0 "	111,000	177,600	218,400	329,400
3.0 "	34,200	40,900	59,000	74,600	18.0 "	116,400	189,000	230,400	347,400
4.0 "	40,800	48,600	69,600	92,400	19.0 "	122,400	200,400	242,400	366,000
5.0 "	45,600	55,200	78,600	111,000	20.0 "	127,800	211,800	254,400	384,000
6.0 "	49,800	61,200	87,600	129,000	21.0 "	133,800	223,800	265,800	402,600
7.0 "	54,600	67,800	99,600	147,600	22.0 "	139,200	235,200	277,800	420,600
8.0 "	60,600	73,200	111,600	165,600	23.0 "	144,600	246,600	289,800	438,600
9.0 "	66,000	84,600	123,000	183,600	24.0 "	150,600	258,000	301,800	457,200
10.0 "	72,000	96,600	135,000	202,200	25.0 "	156,000	270,000	313,800	475,200
11.0 "	77,400	108,000	147,000	220,200	26.0 "	161,400	281,400	325,800	493,200
12.0 "	82,800	119,400	159,000	238,200	27.0 "	167,400	292,800	337,800	511,800
13.0 "	88,800	130,800	171,000	256,800	28.0 "	172,800	304,200	349,200	529,800
14.0 "	94,200	142,800	183,000	274,800	29.0 "	178,800	316,200	361,200	547,800
15.0 "	99,600	154,200	194,400	292,800	30.0 "	184,200	327,600	373,200	566,400

※ 물품의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30KG 해당 운임에 30KG과 29KG간의 지역별 운임차액을 30KG 초과중량(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계산)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

현행

[별지 제1호서식]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내역서

납세의무자	① 업체명		② 대표자	
	③ 본사주소 (전화번호)		④ 업종 (표준산업분류번호)	()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⑤ 품명		⑥ 회계연도 (결산일)	
⑦ 품목번호 (HS 부호)		⑧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동종·동류 비율

⑨ 산출대상 품목군의 범위 (제33조제5항제1호)		⑩ 국내판매형태 (제33조제7항제3호)	(상품 판매, 제조가공 후 판매)
⑪ 동종동류 물품의 품목번호 범위 (제33조제5항제2호)		⑫ 업종 범위 (제33조제7항제2호 각목)	

⑬ 동종·동류비율(%)	
⑭ 동종·동류비율 산출근거 (비교대상업체 상호, 사업자번호, 매출액, 매출원가 등)	
⑮ 최종 적용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⑧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또는 ⑬ 동종·동류비율)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제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동종·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개정

[별지 제1호서식]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내역서

납세의무자	① 업체명		② 대표자	
	③ 본사주소 (전화번호)		④ 업종 (사업자등록 정보)	()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⑤ 품명		⑥ 회계연도 (결산일)	
⑦ 품목번호 (HS 부호)		⑧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동종·동류 비율

⑨ 산출대상 품목군의 범위 (제33조제1항)		⑩ 국내판매형태 (제34조제2항제3호)	(상품 판매, 제조가공 후 판매)
⑪ 동종동류 물품의 품목번호 범위 (제33조제2항)		⑫ 업종 범위 (제34조제1항제2호 각목)	

⑬ 동종·동류비율(%)	
⑭ 동종·동류비율 산출근거 (비교대상업체 상호, 사업자번호, 매출액, 매출원가 등)	
⑮ 최종 적용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⑧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또는 ⑬ 동종·동류비율)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동종·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현행

[별지 제2호서식]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서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대표자	
	③ 본사주소	(담당자 성명, Tel, e-mail)			
④ 업종 (표준산업분류번호)	()		⑤ 업태 (국내판매형태)	(상품 판매, 제조공 후 판매)	
⑥ 신청일자			⑦ 경유세관		
⑧ 산출대상 품목군	⑨ 업종분류부호	⑩ 신청대상 회계연도 (결산일)	⑪ 납세의무자의 대상품목군과 동종동류물품 (HS부호)	⑫ 세관장의 동종·동류비율 (%)	⑬ 신청비율 (%)
		()			
		()			
		()			
		()			
		()			
⑭ 이의제기 사유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위임장	다음 사람에게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대리인			
		구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및 그 근거자료 2. 해당 수입물품(품목군)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3. 제2호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자료					

※ 별표 제7호의 신청서 작성방법에 따라 본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첨부자료와 함께 2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품목이 다수이고 해당 업종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개정

[별지 제2호서식]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서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대표자	
	③ 본사주소	(담당자 성명, Tel, e-mail)			
④ 업종 (사업자등록 정보)	()		⑤ 업태 (국내판매형태)	(상품 판매, 제조공 후 판매)	
⑥ 신청일자			⑦ 경유세관		
⑧ 산출대상 품목군	⑨ 업종분류부호	⑩ 신청대상 회계연도 (결산일)	⑪ 납세의무자의 대상품목군과 동종동류물품 (HS부호)	⑫ 세관장의 동종·동류비율 (%)	⑬ 신청비율 (%)
		()			
		()			
		()			
		()			
		()			
⑭ 이의제기 사유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위임장	다음 사람에게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대리인			
		구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및 그 근거자료 2. 해당 수입물품(품목군)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3. 제2호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자료					

※ 별표 제7호의 신청서 작성방법에 따라 본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첨부자료와 함께 2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품목이 다수이고 해당 업종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현 행

[별지 제15호서식]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 <input type="checkbox"/> 본지점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⑩ 사전심사 검토의견		⑪ 근거 또는 이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영향 미침			
	영향 미치지 않음			
관세법 제3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가산요소()			
	공제요소()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 제__조 적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8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인)

귀 하

- ※ 1. 검토의견에 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2. 검토의견에 부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 정

[별지 제15호서식]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 <input type="checkbox"/> 본지점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⑩ 사전심사 검토의견		⑪ 근거 또는 이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영향 미침			
	영향 미치지 않음			
관세법 제3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가산요소()			
	공제요소()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 제__조 적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1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인)

귀 하

- ※ 1. 검토의견에 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2. 검토의견에 부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현행

[별지 제16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 【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 <input type="checkbox"/> 본·지점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20	⑩ 통관예정세관	
⑪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⑫ 신청내용			
⑬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⑭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p><뒷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p> <p>※ 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개정

[별지 제16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 【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 <input type="checkbox"/> 본·지점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20	⑩ 통관예정세관	
⑪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⑫ 신청내용			
⑬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⑭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p><뒷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p> <p>※ 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현행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1.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나.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2. 신청인의 사전심사 결정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결정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나.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전심사 결정의 철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사전심사 결정의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6. 연례보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6월 미만일 경우 당해년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나.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다.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4호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0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심사 적용기간을 최대 2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1.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나.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2. 신청인의 사전심사 결정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결정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나.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전심사 결정의 철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사전심사 결정의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6. 연례보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6월 미만일 경우 당해년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나.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다.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4호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3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심사 적용기간을 최대 2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별지 제17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연례보고서

보고자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④ 결정물품		(첨부가능)		
⑤ 회계연도		⑥ 통관세관		
⑦ 관련기업	법인명(상호)	대표자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 <input type="checkbox"/> 본·지점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결과				
⑨ 적용기간				
⑩ 실제 거래가격 결정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산출과정)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결과에 따른 연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및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출자관계, 재무제표, 수입물품 전체 현황,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별 가격산출방법 5. 주요 매입처, 매출처별 매입원가 및 매출원가 등 상품 및 제품 가격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6.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개정

[별지 제17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연례보고서

보고자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④ 결정물품		(첨부가능)		
⑤ 회계연도		⑥ 통관세관		
⑦ 관련기업	법인명(상호)	대표자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 <input type="checkbox"/> 본·지점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결과				
⑨ 적용기간				
⑩ 실제 거래가격 결정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산출과정)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결과에 따른 연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및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출자관계, 재무제표, 수입물품 전체 현황,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별 가격산출방법 5. 주요 매입처, 매출처별 매입원가 및 매출원가 등 상품 및 제품 가격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6.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현행

[별지 제22호서식]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 <input type="checkbox"/> 본지사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	⑧ 수입 예정 물품	(품목별·규격별 명세 기재)		
	⑨ 수입 예정 시기		⑩ 통관 예정 세관	
	⑪ 수입가격 결정방법	(필요시 별지로 작성)		
국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⑫ 대상거래			
	⑬ 적용기간			
	⑭ 정상가격 산출방법	(필요시 별지로 작성)		

「관세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개정

[별지 제22호서식]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 <input type="checkbox"/> 본지사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	⑧ 수입 예정 물품	(품목별·규격별 명세 기재)		
	⑨ 수입 예정 시기		⑩ 통관 예정 세관	
	⑪ 수입가격 결정방법	(필요시 별지로 작성)		
국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⑫ 대상거래			
	⑬ 적용기간			
	⑭ 정상가격 산출방법	(필요시 별지로 작성)		

「관세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현행

[별지 제28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 【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 <input type="checkbox"/> 본지점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⑩ 재심사 신청 요지

⑪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8조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인)

귀 하

- ※ 1. 재심사 검토의견에 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2.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

[별지 제28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 【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 <input type="checkbox"/> 본지점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⑩ 재심사 신청 요지

⑪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1조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인)

귀 하

- ※ 1. 재심사 검토의견에 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2.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현행

[별지 제29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 【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 <input type="checkbox"/> 본·지점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20	⑩ 통관예정세관		
⑪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⑫ 재심사 신청내용				
⑬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⑭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뒷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 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부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별지 제29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 【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 <input type="checkbox"/> 본·지점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20	⑩ 통관예정세관		
⑪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⑫ 재심사 신청내용				
⑬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⑭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뒷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 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부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9호서식 <뒷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1.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 나.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2. 신청인의 사전심사 결정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결정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 나.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전심사 결정의 철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 나.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사전심사 결정의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6. 연례보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6월 미만일 경우 당해년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 나.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 다.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4호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0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심사 적용기간을 최대 2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9호서식 <뒷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1.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 나.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2. 신청인의 사전심사 결정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결정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 나.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전심사 결정의 철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 나.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사전심사 결정의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6. 연례보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6월 미만일 경우 당해년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 나.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 다.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4호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3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심사 적용기간을 최대 2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별지 제30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 . ~ 20 . . .		
⑩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⑪ 결정조건				
⑫ 적용기간 연장신청 내용				
⑬ 연장신청기간		20 . . . ~ 20 . . .		⑭ 통관예정세관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4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수입물품거래 관련 계약서(수입물품 구매(공급) 계약서, 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용역계약서 등 포함)				
2.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별지 제30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 . ~ 20 . . .		
⑩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⑪ 결정조건				
⑫ 적용기간 연장신청 내용				
⑬ 연장신청기간		20 . . . ~ 20 . . .		⑭ 통관예정세관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4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4. 수입물품거래 관련 계약서(수입물품 구매(공급) 계약서, 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용역계약서 등 포함)				
5.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행

[별지 제31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승인서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승인서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20		
⑩ 적용기간 연장신청 내용				
⑩ 적용기간 연장신청 심사 결과				
⑬ 연장신청 심사결과 연장적용기간		20 ~ 20	⑭ 통관예정세관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4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승인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개정

[별지 제31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승인서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승인서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20		
⑩ 적용기간 연장신청 내용				
⑩ 적용기간 연장신청 심사 결과				
⑬ 연장신청 심사결과 연장적용기간		20 ~ 20	⑭ 통관예정세관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4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승인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